



안전성검사서

1. 안전성검사번호:
2. 보험 또는 공제 가입번호:
3. 제조업자명:
4. 사업장 소재지:
5.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:
6. 정격/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:
7.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:
8. 안전기준: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성검사기관 직인

※ 이 신고증명서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,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·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.
※ 보험 또는 공제 보장내용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9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.